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연된 事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지금 현재 各市·道 敎育廳 즉, 15個 市·道 敎育廳에서는 昨年 年末에 大田市 敎育廳이 처음 이 條例를 制定했습니다.

그 事由는 전체 15個 市·道 敎育廳이 저희와 같은 立場에서 이것을 推進을 지연하고 있었는데 昨年 年末에 今年度 本 豫算을 審議하는 過程에서 大田市議會에서 이러한 法이 있는데 너희는 왜 이런 組織을 안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이 계셔서 그때 비로소 敎育部와의 협의를 거쳐서 처음 大田市만을 組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個 道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지금 推進 中에 있다는 점을 報告를 올립니다.

이상 간단히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鎭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 敎育監이 提出한 서울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敎育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서울敎育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장
2. 敎育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敎育감이 위촉한 사람
-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敎育감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敎育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敎育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敎育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敎育감이 제출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敎育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안전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제8조(관계기관등과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

<p>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li> <li>2. 출석위원 성명</li> <li>3. 심의사항</li> <li>4. 심의결과</li> <li>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10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감사 개요</li> <li>2. 특별감사 결과</li> </ol> <p>Ⅲ. 향후대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감사결과 조치계획</li> <li>2. 신입생 모집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li> <li>3. 학급감축 조치계획</li> </ol> <p>Ⅳ. 기타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연혁</li> <li>2. 법인 및 학교현황</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I. 사안발생경위 및 언론보도사항</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안발생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3월초 학교장이 모전문대학장 취임 소문이 나돌자 평소 교장에 대한 불만 교사 10명이 신입교장 부임을 전제로 일부 교사들이 건의문을 작성, 교무실에 배포하고 양철원 교사가 교장에게 건의 하자,</li> <li>○ '95.3.15 직원조회시 건의내용 수용을 발표한 후 주동 역할을 한 이근균 교사의 사표를 중용하자 신분의 불안을 느낀 서명교사 10명이 '95.3.20 결근을 하였고,</li> <li>○ 동일 21:30경에는 결근교사 9명이 SBS 기자 7~8명을 대동, 래교하여 일부기자가 교장과 면담중 교사 4~5명이 2층 교무실로 기자들과 함께 올라가 학적서류를 강제 열람, 촬영토록 하여</li> <li>○ '95.3.21. 20:00 SBS 뉴스시간 등 각 언론에서 학교비리를 보도하게 되었음.</li> </ul> </li> <li>2. 언론보도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보도일시 및 기관</li> </o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보도일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95.3.21. 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SBS</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5.3.22</td> <td>○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td> </tr> </tbody> </table> </li> <li>나. 보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모집 신입생 입학금 및 등록금 4천여만원 학교측 착복('93, '94)</li> </ul> </li> </ol>	보도일시	보도기관	'95.3.21. 20:00	SBS	'95.3.22	○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보도일시	보도기관						
'95.3.21. 20:00	SBS						
'95.3.22	○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